

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책무도 그만큼 무거워져 중재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잘 이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.

거. 기타

그 외 개정안에서는 ‘부당광고행위 금지’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언론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 검토가 필요하여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.

또한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정부가 그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문제 등으로 채택이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.

#### 4. 맺음말

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상당 부분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, 국민의 권익이 더 한층 보장되는 반면에 언론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.

따라서 국민들은 언론중재법이 본래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언론중재법을 이용하는 한편 언론중재법을 남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, 언론사 또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 제도의 확대, 데스크의 기능 정립,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가입, 공제제도 등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,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,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.